

# 체육특기자선발·연구위원회 규정

시행 : 2023. 6. 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체육특기자선발·연구위원회 규정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체육특기자 선발의 공정성, 투명성,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체육특기자 전형의 지원자격·모집단위·전형방법·종목·인원·평가기준 등
2. 체육특기자 전형의 부정방지 대책
3. 체육특기자 선발 사전심의
4. 기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 관련 사항을 모집요강 확정 전에 마련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육특기자 지원자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입학사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제캠퍼스에 둔다.

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(국제)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입학처장, 체육대학장, 체육부장,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 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간사는 입학전형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결방법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제7조(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